



Web Contents



2024년 05월 07일 07시 20분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 안내(정오표 포함)

2023.08.31 조회수 274 등록자 이유진

코로나 19 4급 등급 하향에 따라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

-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대상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확진(PCR검체채취후 양성)되어,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고 중환자실 격리실에서 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중증 치료를 받은 확진 환자
(’23.8.31.검체채취자부터 적용, 이전 검체채취자는 이전 지침을 따름)
- * 중환자실 격리실: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가 산정된 경우, (추가코드: AJ010, AJ011, AJ020, AJ021)
- * (주의)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치료받았더라도 중증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 hwp 입원격리 치료비 비용 신청서_서식_제10판.hwp (190 hit/ 171.5 KB) [↓](#)
[미리보기](#)
- pdf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_정정.pdf (184 hit/ 759.6 KB) [↓](#)
[미리보기](#)
- pdf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_신구조문대비표.pdf (186 hit/ 1.30 MB) [↓](#)
[미리보기](#)
- pdf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_정오표.pdf (156 hit/ 472.1 KB) [↓](#)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

다음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담당 처방,조제기관 목록 및...](#)

MokPo - Si
Web Contents

